#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76

발의연월일: 2025. 2. 19.

발 의 자:김종민·복기왕·천하람

윤호중 • 이재관 • 어기구

이수진 • 문대림 • 이인영

장철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」 및 「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」(중소벤처기업부고시)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, 최대주주 등에게 기업의 투자금 상환 의무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,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, 최대주주 등에게 고의·과실이 없더라도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그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제기됨.

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,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

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, 제27조제1항제2호의2, 제39조제1항제2호의2,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).

##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의2.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 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- 가.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경우
  - 나.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다.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
- 라.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제2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2의2.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 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가.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경우
- 나.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다.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
- 라.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2의2.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 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  - 가.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경우
    - 나.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다.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
- 라.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제5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4의2.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

- 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가.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경우
- 나.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
- 다.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
- 라.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

#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연대책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2항제4호의2 및 제27조 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4조(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제14조(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 행 등) ① (생 략) 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 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 만,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 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4. (생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4의2.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 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 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 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 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 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가.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 5. (생략)

③ • ④ (생 략)

제27조(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)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창 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 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· 2. (생략)

<신 설>

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
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
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
나.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
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
확인된 경우
다.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
반한 경우
라.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
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
<u>경우</u>
5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)
①
1.・2. (현행과 같음)
2의2.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

2의 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 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 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.

3. (생략)

②・③ (생 략)

제39조(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)

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 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 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가.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
- 나.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

   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

   확인된 경우
- <u>다.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</u> 반한 경우
- 라.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경우
- 3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)

1	 	 	

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·2.(생 략) <신 설>

\_\_\_\_\_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 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 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 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 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 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가.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
  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
   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
  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
  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
- 나.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

   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

   확인된 경우
- <u>다.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</u> 반한 경우
- 라.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경우
- 3. (현행과 같음)

3. (생략)

#### ② (생 략)

- 제52조(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 저 행 등) ① (생 략)
  -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 만,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 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세52조(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
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2
1. ~ 4. (현행과 같음)
4의2.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
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
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
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
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
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
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
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가.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
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

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

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

② (청해고 가으)

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나.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확인된 경우

<u>다.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</u> 반한 경우

라.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경우

5. (현행과 같음)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5. (생략)

③ • ④ (생 략)